

설계자	확인자		
		설계년월일	2021.06.10.

KIND 타당성조사 지원사업
개선방안 연구용역

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2
3. 과업내용.....	2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4
5. 과업수행 방법.....	6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8
7. 보안대책.....	9
II. 예정공정표.....	11

I. 과업지시서

1. 개 요

□ 과업명 : KIND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

□ 과업 배경 및 목적

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이하 'KIND')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2019년 2월부터 위탁 운영 중
 -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발굴·지원 및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, 개념계획 또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으로서, ① 초기 매몰비용부담 완화로 국내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 개발 및 수주(사업권 확보)를 조기 지원하고, ② 컨소시엄 유도로 국내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자본금 출자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리스크를 낮추는 목적을 지님
 - KIND는 2019년 총 16건의 타당성조사 사업을 지원한 이후 2021년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선정, 용역관리, 후속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- KIND는 사업 위탁운영 3년차를 맞아 지원대상사업 선정시 활용 중인 기존 세부평가 기준 검토, 추가 지원방안 마련,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함
 - 기존의 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에서, 최근 사업제안자의 분담의무 추가에 따른 신청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 등 추가 필요성 제기
 - 인프라사업은 타 분야 대비, 사업개발비 및 리스크는 크지만 수익성은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 검토 필요
 - 해외 유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(공중)별 예타·본타·제안서 보고서를 분석하여, 경쟁력 있는 목차 및 내용 구성을 제안할 필요
 - 국내 기관들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현황 파악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할만한 사항 제언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60일

3. 과업내용

□ 지원대상사업 세부 평가기준 개정(안) 마련

- 공모 사업 평가 기준표 및 세부 평가기준 검토
 - 계량평가 및 정성평가 항목의 적정성
- 비공모 사업 평가 기준표 및 세부 평가기준 검토
 - 계량평가 및 정성평가 항목의 적정성
- 평가기준 개선점 도출 및 기준 개선(안) 마련
 -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국내·외 사례조사를 통한 개선(안) 제언

□ 인프라사업 관련 추가 지원방안 검토

- 인프라사업 개발 단계별 지원현황 분석 (국토교통부 지원 프로그램 중심)
 - * (예시) 사업개발 및 제안단계(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지원, KIND 예타·본타) → 실시협약 단계(GIVF) → 금융 조달단계(GIF, PIS 펀드)
- 제안형 사업의 제안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검토
 - 지원 대상
 - * 국내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KIND에서 예비·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사업, Team Korea를 구성하여 수의 및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또는 발주처 입찰준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KIND 또는 국내 인프라 공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등
 - 지원 내용
 - * (예시) 발주국 제출용 제안서 작성 비용, 자문용역 등 사업개발비
 - 지원 규모
 - * (예시) 국내기업이 지출한 총 소요비용의 30%, 사업당 지원 금액 20억원 이내 등
 - 지원 형식 및 선정 절차
 - 지원 방식 및 정산 방식

□ 타당성조사 관련 사업유형(공종)별 보고서 조사 및 분석

- MDB(WB, ADB) 등 해외 유사 제도 활용기관의 사업유형(공종*)별 예타·본타 보고서 및 제안서 분석
 - * 도로, 철도, 발전, 도시개발, 환경·사회 인프라 등
- 해외기관 보고서와 국내 민간투자사업 보고서와의 차이 분석
-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경쟁력 있는 목차 및 내용 구성 제안
 - * (예시) 해외사업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(Value for Money) 항목 제안

□ 국내 기관들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례 분석

- 국내 기관들*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현황** 파악
 - * 수출입은행, 플랜트산업협회, 한국에너지공단, 해외건설협회, 해외항만개발협력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(발주처 협의 후 진행)
 - ** 지원내용, 지원규모, 선정기준, 사후관리 등 (범위·기간관련 발주처 협의 후 진행)
- 국내 기관 유사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성과 분석

□ 결론 및 제언

- 국내·외 사례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사항
- 사업추진 단계와 예타·본타 보고서 활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용역 발주 방법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일부 과업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5. 과업수행 방법

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의 자문을 위한 자문사 선정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문보고서 원본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

□ 현지조사

- 내실 있는 해외 사례조사 과업수행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 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우리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44조(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

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II. 예정공정표

항목		1	2	3	4	5	6	7	8	9주차	비고
1. 관련 현황조사		■									
2. 지원 대상사업 세부 평가기준 개정(안) 마련						■					
3. 인프라사업관련 추가 지원방안 검토				■							
4. 사업유형별 보고서 입수 및 분석		■									
5. 국내 F/S지원사업 사례 분석		■									
6. 성과품 작성								■			
보고회		착수 보고				중간 보고			최종 보고		
과업진도율	당기	10	10	10	10	15	15	15	10	5	
	누적	10	20	30	40	55	70	85	95	100	